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안

제출일자 : 2006. 3.

제 출 자 : 경기도지사

□ 제정이유

- 역사·문화·전통보급 및 문화소통의 핵심인 박물관·미술관이 선진국에 비해 절대부족인 현실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하고는 있으나
- 국립 및 일부 대기업 운영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박물관/미술관은 재정적·제도적 지원 미비로 기능상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하고 있으며
- 최근 사회적·문화적 의식수준의 향상과 경제발전으로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 및 지원심의, 정책자문 등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내 각종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을 통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를 육성·발전시켜야 함.(안 제3조)
- 다. 경비지원의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각종 경비지원 및 지원해지에 대한 심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심의, 지원사업의 평가 및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을 함.(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첨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을 통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단체”라 함은 민법·상법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 및 발전)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진하는 위 1호 내지 2호에 소요되는 경비
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인·단체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해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문화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도의회 의원
3.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 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단체·법인은 도지사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박물관 등록”을 삭제한다.